

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11]

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(제39조제1항 관련)

1. 표시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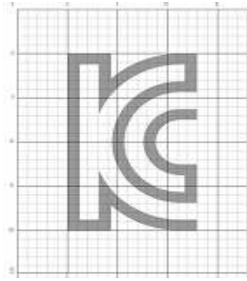
가. 안전확인표시의 도안 모형



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:

나. 도안요령

- 1)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,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

- 2)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 또는 검은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을 원칙으로 한다.

2. 표시방법

- 가.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,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,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나.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.